

※ 작 성 방 법

1. ⑥란의 ()에는 신고분·고지분·연부연납분·분납분(토지초과이득세)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2. ⑧란에는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외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.
 - 1) 국세 및 국채
 - 2) 상장 유가증권
 - 3) 부동산
 - 4) 비상장 유가증권
 - 5)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
3. ⑩란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 - 1) 신고분 또는 고지분의 경우에는 상속 및 증여당시
 - 2) 연부연납기간중 각지분의 분납세액의 경우에는 수납일 현재
4. ⑪란의 ()에는 평가기준을 시가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5. ⑭란에는 당해 물납재산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토지초과이득세액만을 기재합니다.